
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연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00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0. 29.

발 의 자 : 이연희 · 임미애 · 이기현
김한규 · 박홍배 · 최기상
박상혁 · 홍기원 · 허종식
맹성규 · 김남희 · 손명수
복기왕 · 한민수 · 김정호
황 희 · 윤후덕 · 이정문
한준호 · 문진석 · 민형배
윤종균 의원(2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“경력단절”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,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, 가사, 간병 등의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, 용어 변경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, 나아가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임.

이에 “경력단절여성”의 용어를 “경력보유여성”으로 변경하여 경력보

유여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24조제5항).

법률 제 호
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5항 중 “경력단절여성”을 “경력보유여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경제활동 참여) ① ~ ④ (생 략)	제24조(경제활동 참여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 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<u>경력단절여성</u>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 여야 한다.	⑤ ----- ----- <u>경력보유여성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⑥ (생 략)	⑥ (현행과 같음)